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8

제안년월일 : 2015.01.29
제 안 자 : 행정복지위원회

1. 수정이유

○ 제정 조례의 상위법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'발달장애인'의 용어를 재 정의하고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포함토록 하며 상기 법률의 부칙에 의거 시행일을 명시하여 동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수정내용

○ 동 제정조례안 발달장애인의 정의를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 수정함. (안 제2조제1호)

○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되 수립기간 삭제 함.(안 제4조제1항)

○ 동 제정조례안 시행일을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일과 같이 함. (부칙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2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(이하 “서대문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다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”를 “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”로 한다.

○ 안 제4조제1항 중 “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”를 “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○ 부칙 중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를 “이 조례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)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발달장애인” 이란 **서울특별시 서대문구**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**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.** 2. “종합복지서비스” 란 국가, 서울특별시, 서대문구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·재활·교육·직업훈련·고용·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말한다. 3. “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(이하 “복지단체” 라 한다)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	**제2조(정의)** ---------- ---------- 1. ---------- **서울특별시 서대문구(이하 “서대문구” 라 한다)** ---------- **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.** 2. (제정안과 같음) 3. (제정안과 같음)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대문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을 **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**	**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**

수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)

제 정 안	수 정 안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. 재활, 직업훈련, 고용,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 3.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.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6.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	② (제정안과 같음)
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	③ (제정안과 같음)
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